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2012.7.11 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 등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신설(안 제3조)

다. 금고 지정 조항 정비(안 제4조제1항제2호)

- 1회에 한하여 재지정 가능한 조항 삭제

라. 금고 지정 기준 중 협력사업비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강화(안 제7조제1항)

- 위원수 확대 9~12인(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 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 개정(인 제5조제2항 별표)
- 대손충당적립율 배점 하향(3점⇒2점)
 -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 배점 하향(3점⇒2점)
 -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이용 편의성 배점 하향(6점⇒5점)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배점 상향(5점⇒6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배점 상향(5점⇒7점)
 -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배점 상향(5점⇒7점)
 -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실적 등 배점 하향(5점⇒3점)
 - 지역사회 기여 실적 평가항목 삭제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변경(최고 점수의 10% 단위로 차감 부여)
 군민이용의 편의성 및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 기준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2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입법예고(2012.8.8 ~ 2012.8.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감사실-16455호 '12.8.29)
 -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6452호 '12.8.29)
 - 성별영향 평가 : 여성위원 확대 권고(주민생활지원과-37476호 '12.8.31)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평창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및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군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과 금고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단,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었으면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금고약정서에 군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군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평창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함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내주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따른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출연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

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해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 기한

까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I. 총괄

(단위 : 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평가	6	
㉡ 국내 평가기관 평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	
㉠ BIS 자기자본 비율	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 비율	7	
㉢ 자기자본 이익률	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강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대손 충당금 적립율	2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	2	
3. 군민 이용의 편의성	21	
가.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	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실적 등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5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군과의 협력사업' 평가는 군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II.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2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국외 평가기관 평가(6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 국내 평가기관 평가(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4.0점	4.0점	3.5점	3.0점	2.5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확인 (배점등급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적용)

㉠ BIS 자기자본 비율(7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7.0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7.0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 자기자본 이익률(6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20%이상	16%이상~20%미만	12%이상~16%미만	8%이상~12%미만	8% 미만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 대손 총당금 적립율(2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2. 군에 대한 예금·대출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나. 공공예금 예치금리(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라. 수시입출금 예치금리(2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3. 군민 이용의 편의성(21점)

가.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라.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3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0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실적 등(3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군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별첨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상진
연락처	(033) 330-2270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 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